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02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 장철민·김태선·조승래

김교흥 • 허종식 • 김준혁

장종태ㆍ허 영ㆍ김한규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 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소) ①		
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		
	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		
	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		
	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		
	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		
	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		
	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		
	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